의안번호	2126489
의 뢰 인	최재형 의원
회 답 일	2024.02.19.
추계번호	24C0134

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조 (목적)	이 법은 국립대학병원(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한다)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의학,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・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	의무규정
2	안 제19조 (출연 또는 보조)	(제3항) 정부는 대학병원의 사업과 운영 등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	재량규정
		(제4항)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출연, 보조 및 지원의 기준・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의무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[1]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조(목적) 및 안 제19조(출연 또는 보조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❑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기존 출연금 및 보조금 규정 외에 '사업과 운영 등을 위한 경비'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, 지원의 기준·관리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지출규모에 대한 대한 합리적 예측이 어려움

1) 개정안은 서울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, 관련 사무 및 인력, 예산 등은 이관될 수 있으나, 법 개정에 따른 직접적인 업무량 및 인력의 증원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추가 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
○ 현행 「국립대학병원 설치법」은 대학병원의 기본시설·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'출연금'(법 제19조제1항),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에 대한 '보조'(법 제19조제2항), '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·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(借款)의 원리금 상환 경비를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는 정부 보조'에 대하여 규정(법 제19조제3항)

- 교육부는 '국립대병원 지원 사업'에 총 111,369백만원(2024년 예산기준)을 편성[2)]

[표 1]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(교육부) 예산 산출세부내역

예 산	산출내역
사업출연금(350-02) 105,019,000천원	가. 시설확충 및 보수 (56,262,000천원) 나. 장비구입 및 교체 (31,085,000천원) 다. 정책사업 (17,672,000천원)[3)]
민간경상보조(320-01) 6,350,000천원	정책사업 (6,350,000천원)[4)]

자료: 교육부 2024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

○ 개정안에 따라 '대학병원의 사업과 운영'에 대한 경비를 정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될 경우 '기존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우선 충당되던 운영비 등'과 '대학병원의 사업'에 대하여도 정부의 지원이 실시될 수 있어 정부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시점에서 지원이 실시될 구체적 내역 및 소요 예산에 대한 예측이 어려움

-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정부의 '필수의료 혁신전략(2023.10.)'의 성공적 이행을 위하여 '국립대학병원이 지역·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'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 바, 관련 사업 지원 등[5)]이 추가로 실시될 가능성이 있음

2) 보건복지부에서도 771억원(2022년 기준)을 국립대병원에 지원('23.10. 보건복지부 보도자료)
3) 임상교육훈련센터건립비
4)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한시지원사업
5) 보건복지부는 '필수의료 혁신전략(2023.10.)'에서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집중 육성하고 지역 병·의원과 상생·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'교수 정원 대폭확대 등을 통한 우수인력확보', '한국형 ARPA-H 필수의료 장기투자, 진료-연구 병행 지원, 산학협력단 설치 등 R&D 투자', '중증·응급 보상 강화, 필수진료센터 보상 강화 지속 확대 등 공공정책수가', '노후 의료 시설·장비 개선 지원 확대, 기부금품 모집 허용 등 재원 확보 등 인프라 첨단화'와 넥스트 팬데믹 대비를 위한 '국립대병원 중심 인력·병상 즉각 대응체계 확립 및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연계·협력 강화로 대응 기반 확충' 등을 발표한바 있음

❑ 이에 개정안에 관련 재정소요를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Ⅳ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혜승	이진우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혜승	02-6788-4627	hs0387@assembly.go.kr